

본 지침에서 특정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민사 괴롭힘 금지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이 명령은 괴롭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 제가 민사 괴롭힘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귀하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군가가 귀하를 괴롭히는 경우
- 누군가가 귀하를 스토킹하는 경우
- 누군가가 귀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또는
- 누군가가 폭력으로 귀하를 위협한 경우

### 명령은 제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귀하를 괴롭히거나 위협하지 말 것
- 귀하에게 연락하거나 귀하에게 접근하지 말 것, 그리고
- 화기(총기), 화기 부품 또는 탄약을 소지하지 말 것. 여기에는 화기 리시버와 프레임, 그리고 리시버나 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쉽게 전환될 수 있는 품목이 포함됩니다(형법 제16531조 참조).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소지할 수 없는 품목에 관한 상세 정보는 <https://selfhelp.courts.ca.gov/restraining-orders/prohibited-item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귀하의 가족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괴롭힘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라고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것
- 귀하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라고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것
- 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것

이러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폭력 보호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양식 [DV-100](#)을 제출하십시오.

또한 법원은 다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귀하에게 빚진 돈을 지불하도록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것
- 귀하가 소유한 임대 부동산에서 퇴거하도록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것
- 괴롭힘과 무관한 성가신 행위를 중지하도록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것

이러한 구제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괴롭힘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귀하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거나 귀하를 스토킹한 경우, 귀하는 신청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기에게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이를 위해 [FW-001](#)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근거가 과거의 폭력 행위, 신빙성 있는 폭력 위협, 스토킹인 경우, 귀하는 보안관 또는 경찰관의 무료 명령 송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안관 또는 경찰관에게 명령을 무료로 송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송달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안관이나 경찰관에게 명령 송달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을 받으려면 어떤 양식이 필요합니까?

양식 [CH-100](#), [민사 괴롭힘 금지 명령 신청서](#) 및 양식 [CLETS-001](#), [기밀 CLETS 정보](#)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해야 하는 경우 양식 [MC-02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 [CH-109](#), [법원 심리 통지서](#)의 항목 1과 2, 그리고 양식 [CH-110](#), [임시 금지 명령 \(CLETS-TCH\)](#)의 항목 1, 2, 3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이 양식들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해당 양식들은 법적 발행인이나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www.courts.ca.gov/forms](http://www.courts.ca.gov/forms))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 명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는 괴롭힘이 발생한 카운티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살고 있는 카운티의 상급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민사 괴롭힘 금지 명령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하십시오. (셀프 헬프 센터 또는 법률 구조 협회에서 신청 접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귀하의 양식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서기는 [법원 심리 통지서](#) 양식에서, 그리고 귀하의 즉시 명령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사법 담당자가 서명한 [임시 금지 명령서](#) 사본에서 심리 날짜를 제시할 것입니다.

**명령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임시 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결정합니다. 때때로 법원이 더 빨리 결정하기도 합니다. 서명된 **법원 심리 통지서** 및 **임시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지 문의하십시오.

**명령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법원이 임시 명령을 내리는 경우, 이 명령은 귀하의 심리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때 법원은 명령을 계속 유지할지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명령은 최대 5년 동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이 명령에 관해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귀하 또는 해당 명령에 의해 보호되는 사람이 아닌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금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명령서 사본을 “**송달**”(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송달인은 양식 **CH-200, 직접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송달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원 서기에게 양식 **CH-200-INFO, “직접 송달 증명서이란 무엇일까요?”**를 요청하십시오.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전화하십시오.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체포되어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까?**

예. 서기가 알려주는 날짜에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법원 심리에 증인을 동반해야 합니까?**

증인이 필수는 아니지만, 단지 귀하의 진술에 그치지 보다는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더 많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사람을 데려오거나 아래의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증인
- 선서하에 작성된 증인의 서면 진술서
- 사진
- 진단서 또는 경찰 보고서
- 손상된 재산
- 협박 편지, 이메일, 전화 메시지

법원은 심리에서 증인의 발언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심리에 증인의 진술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식 **MC-030, 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변호사 선임은 좋은 생각이지만 필수는 아니며, 귀하는 법원이 배정하는 무료 변호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카운티에 있는 무료 및 저비용 법률 서비스 및 셀프 헬프 센터에 관해서는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원 심리에서 금지 명령을 받은 자를 대면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청문회에 오면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귀하에게 발언할 권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사법 담당자에게 말하십시오.

**누군가와 법정을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까?**

예. 심리 중에 함께 앉아 있을 사람과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법정에서 귀하를 위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변호사(있는 경우)만 귀하를 위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CH-109** Notice of Court Hearing Clerk stamps date here when form is filed.

---

**1 Person Seeking Protection**

a. Your Full Name: \_\_\_\_\_

Your Lawyer (if you have one for this case):  
 Name: \_\_\_\_\_ State Bar No.: \_\_\_\_\_  
 Firm Name: \_\_\_\_\_

b. Your Address (If you have a lawyer, give your lawyer's information. If you do not have a lawyer and want to keep your home address private, you may give a different mailing address instead. You do not have to give telephone, fax, or e-mail.):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Telephone: \_\_\_\_\_ Fax: \_\_\_\_\_  
 E-Mail Address: \_\_\_\_\_

Fill in court name and street address: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_\_\_\_\_

Court fills in case number when form is filed.

Case Number: \_\_\_\_\_

**2 Person From Whom Protection Is Sought**

Full Name: \_\_\_\_\_

The court will complete the rest of this form.

**3 Notice of Hearing**

A court hearing is scheduled on the request for restraining orders against the person in **2**):

Name and address of court if different from above:

**Hearing Date** → Date: \_\_\_\_\_ Time: \_\_\_\_\_  
 Dept.: \_\_\_\_\_ Room: \_\_\_\_\_

---

**4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Any orders granted are on Form CH-110, served with this notice.)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for personal conduct and stay-away orders as requested in Form CH-100, Request for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s, are (check only one box below):

(1)  All GRANTED until the court hearing.

(2)  All DENIED until the court hearing. (Specify reasons for denial in b, below.)

(3)  Partly GRANTED and partly DENIED until the court hearing. (Specify reasons for denial in b, below.)

---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ca.gov  
 Revised July 1, 2014, Mandatory Form  
 Code of Civil Procedure, § 527.5  
 Approved by DOJ

**Notice of Court Hearing**  
(Civil Harassment Prevention)

CH-109, Page 1 of 3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애가 있고 법원에 있는 동안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양식 [MC-410](#),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MC-410-INFO](#), [법원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방법](#) 을 참조하십시오.

**절차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으로도 제공됩니다.**

<https://selfhelp.courts.ca.gov/CH-restraining-order> 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지역 내에서 도움을 얻으려면:**

[현지 정보 기입]에 문의하십시오.]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류를 접수할 때 서기에게 법원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양식 [INT-300](#), [통역사 신청서 \(민사\)](#) 또는 현지 법원 양식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해 통역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통역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selfhelp.courts.ca.gov/request-interpreter>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취소하기 위해 금지 명령을 받은 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오직 판사만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법원에 명령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